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2019. 6. 13.

강릉원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강길원

목 차

- I. 북한이탈주민정책
- II.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현황
- III.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IV. 문제점 및 정책 방안

I. 북한이탈주민정책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I.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I. 북한이탈주민정책

- 1997 ~ 1999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 1999 ~ 2004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 2004 ~ 2006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 2006 ~ 2008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 2009 ~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 201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2013 ~ 201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관련 법률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 귀순 북한동포보호법(93.6~)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I.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I. 북한이탈주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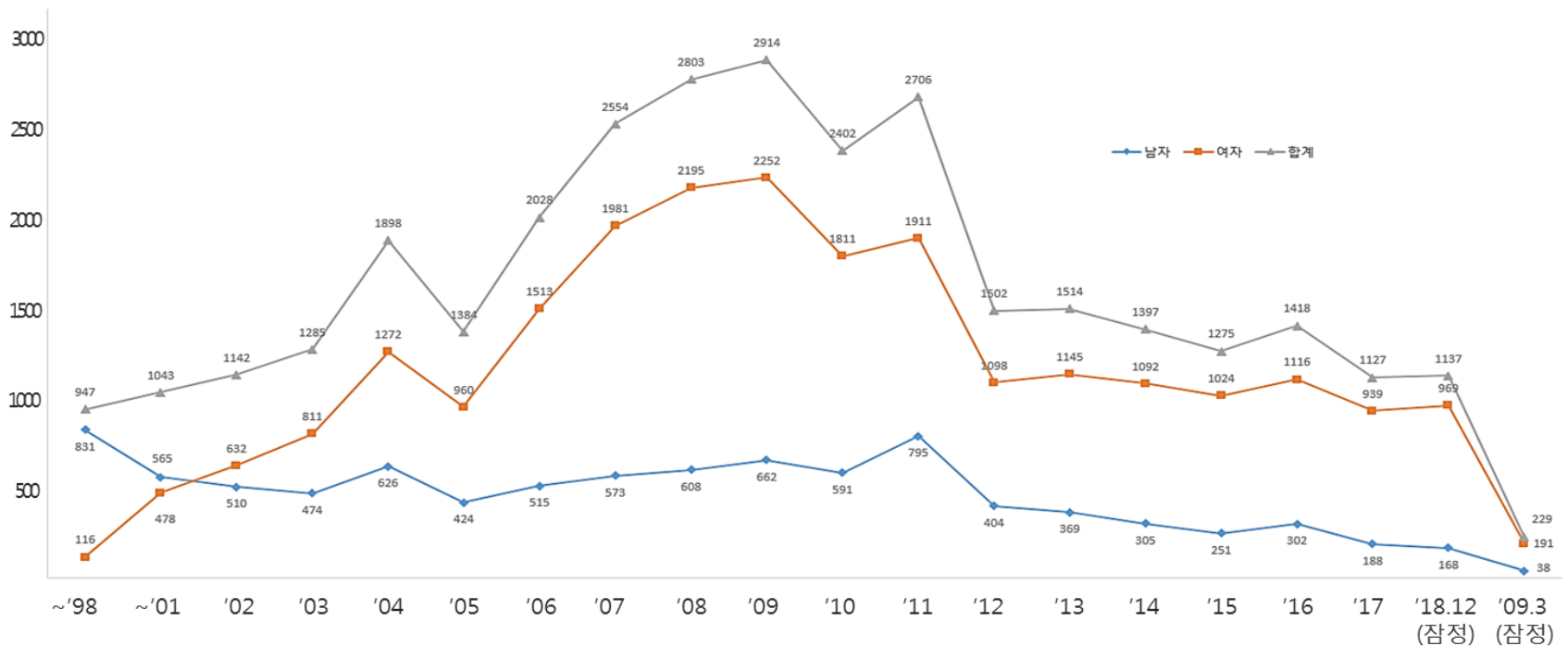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
 -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8월, '14.1월, '14.5월)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I. 북한이탈주민정책

● 국내 입국 추세

-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 감소, 2016년도는 1,418명 입국
-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 71.8%를 차지
- '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1,000~1,500여명 수준 유지
- '19년 3월 기준 총 32,705명 입국(남 9,199, 여 23,506명)
* ('48년) 최초 귀순 → ('07.2월) 1만명 → ('10.11월) 2만명 → ('16.11월) 3만명



<출처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I. 북한이탈주민정책

● 연령별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36	1,614	2,488	2,074	1,328	522	329	8,991
여	626	1,985	6,463	6,995	4,108	1,234	943	22,354
합계	1,262	3,599	8,951	9,069	5,436	1,756	1,272	31,345
비율	4.0%	11.5%	28.6%	28.9%	17.3%	5.6%	4.1%	100%

● 재북 직업별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계
남	399	666	3,939	3,149	76	79	210	473	8,991
여	129	115	8,196	11,467	1,225	193	488	541	22,354
합계	528	781	12,135	14,616	1,301	272	698	1,014	31,345
비율	1.7%	2.5%	38.7%	46.6%	4.2%	0.9%	2.2%	3.2%	100%

● 재북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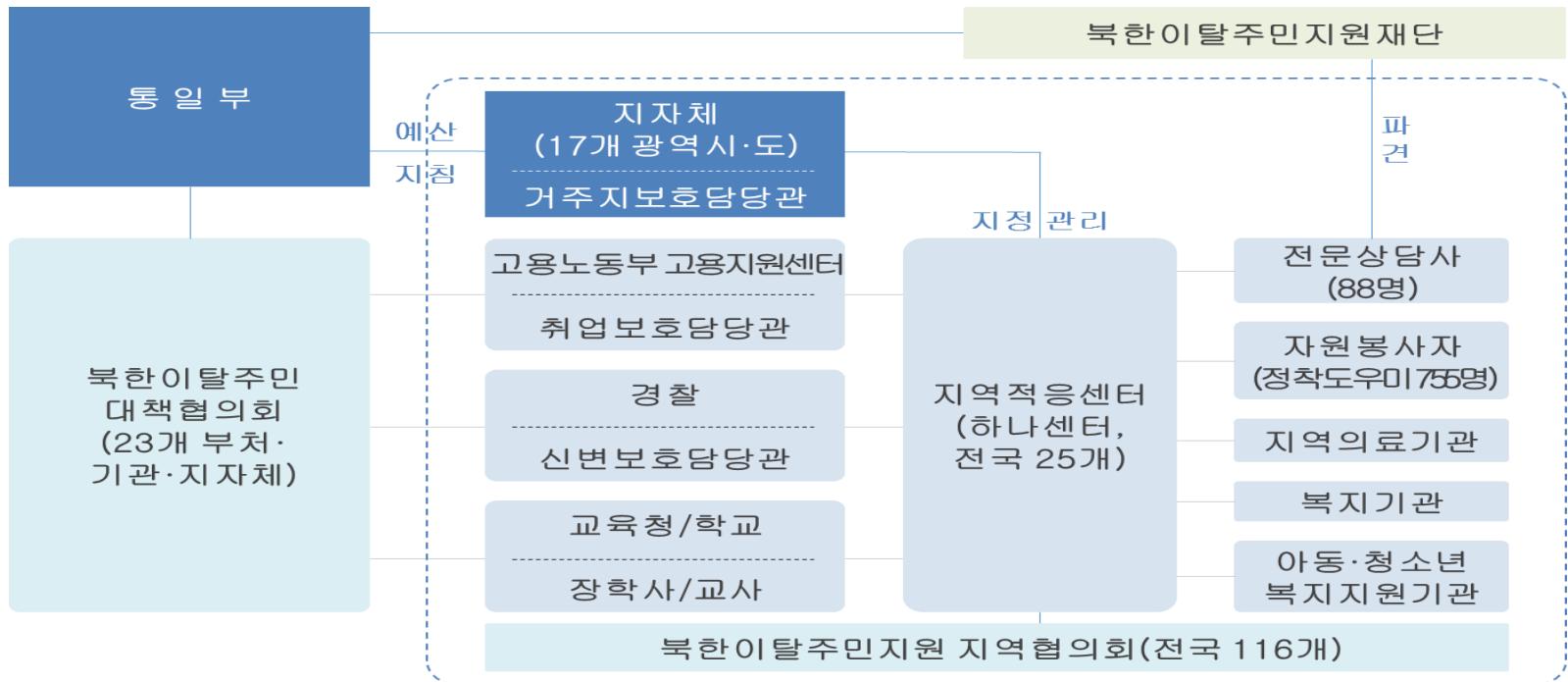
(’18. 3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계
남	416	135	759	5,504	781	1,034	353	9	8,991
여	398	195	1,350	16,371	2,270	1,128	495	147	22,354
합계	814	330	2,109	21,875	3,051	2,162	848	156	31,345
비율	2.6%	1.1%	6.8%	69.7%	9.7%	6.9%	2.7%	0.5%	100%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

I. 북한이탈주민정책

-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
 -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내 민간 단체 및 지역 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및 정착과정

I. 북한이탈주민정책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동조사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의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보호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 운영
-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88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I. 북한이탈주민정책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비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50만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약 530명)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30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현황

I. 경제활동 실태

II.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실태 현황

● '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대상자 26,693명 중 표본 3,000명) 결과, 탈북민 72.5%가 '남한생활에 만족함'이라고 답변, 2017년 대비 1.1%p 낮아짐 (불만족 3.8%)

- 주요 정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실업률이 증가한 상황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

함에 따른 결과로 짐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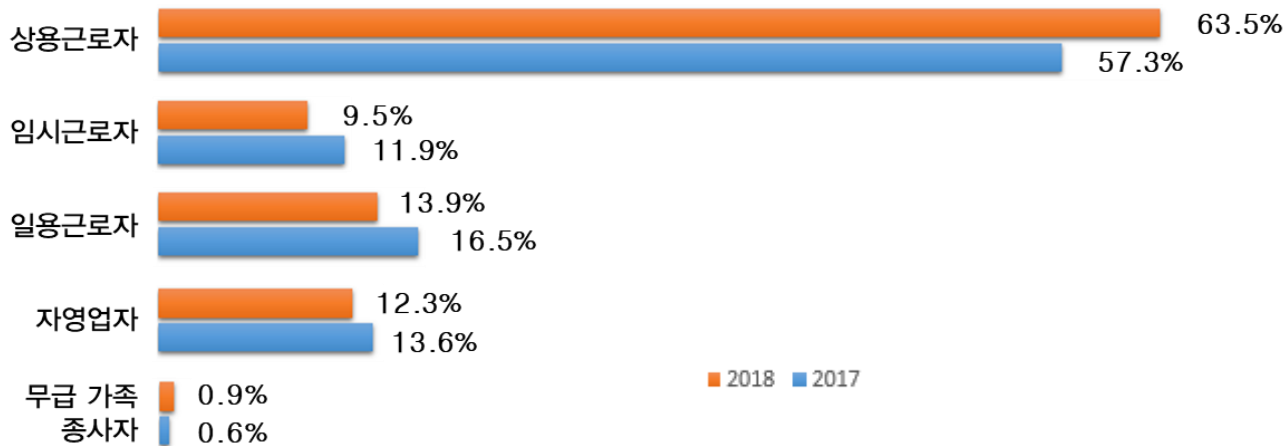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14년 탈북민	'15년 탈북민	'16년 탈북민	'17년 탈북민	'18년 탈북민	일반국민
경제활동 참가율	56.6	59.4	57.9	61.2	64.8	63.4('18)
고용률	53.1	54.6	55.0	56.9	60.4	60.9('18)
실업률	6.2	4.8	5.1	7.0	6.9	4.0('18)
생계급여 수급률	32.3	25.3	24.4	24.4	23.8	3.1('17)
초·중·고 중도탈락률	2.5	2.2	2.1	2.0	2.5	0.9('17)

2. 취업자의 경제활동

II.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실태 현황

- 상용근로자 비중은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여 고용안정성 증대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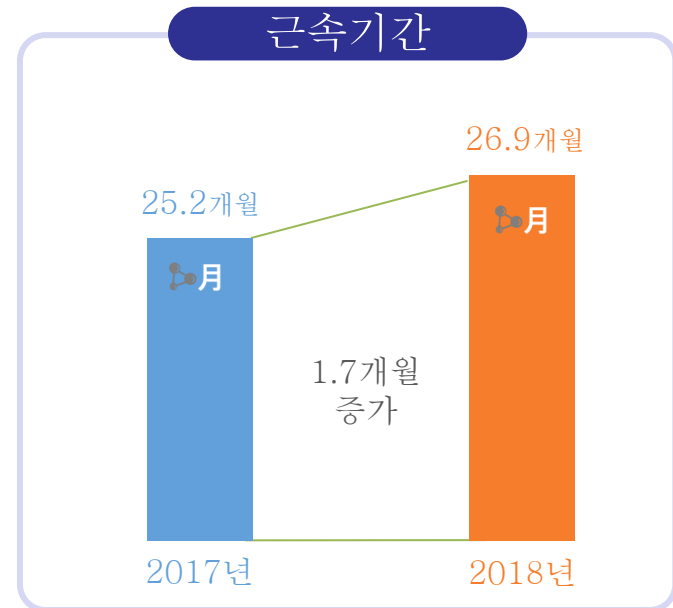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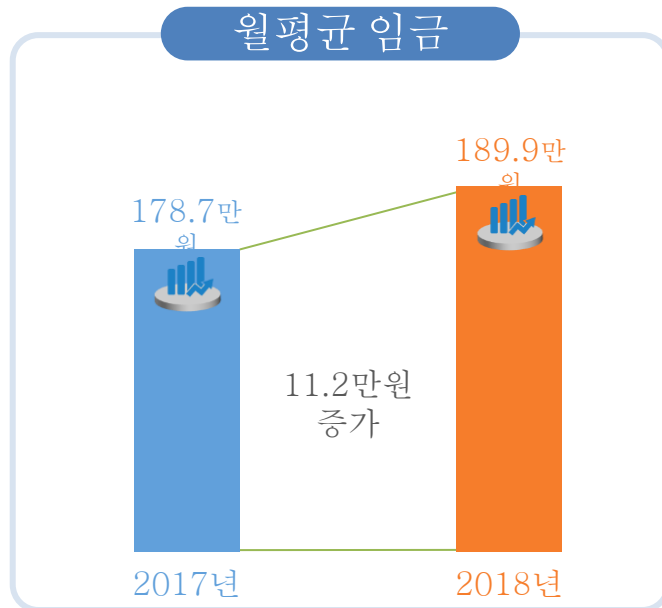
01 단순 노무 종사자	22.5%
02 서비스 종사자	18.1%
03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1.7%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1%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6%

사업체 유형

01 제조업	23.7%
02 숙박 및 음식점업	15.4%
03 도매 및 소매업	10.7%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
05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3.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평균 임금(최근 3개월)은 189.9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2만원 높아진 반면, 일반국민 대비 65.9만원 낮음
- 평균 근속기간은 26.9개월로 2017년 대비 1.7개월 늘어난 반면, 일반국민 대비 46.1개월 낮음



4. 일반국민의 의식

II.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실태 현황

- '18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응답자 2,710명) 결과,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2%(2017년 대비 2.9% 감소),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9.8%로 나타남.
 -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 시,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 추세
 - 차별/무시당한 이유가 2017년 대비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4.4%, '전문적 지식·기술 등이 남한사람보다 부족해서' 0.9% 낮아졌고,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는 1.8% 높아짐
- 일반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수용 및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증가
 - '18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2%로 지난 3년간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음.
 - 한편,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짐
 - 탈북자에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12년간 긍정적 견해 - 이질화 해소, 정부지원 증대 - 는 전반적으로 감소

5.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한 필요한 지원



취업·창업 지원
24.9%



의료 지원
17.8%



교육 지원
13.7%



소득 지원
12.3%



주택문제 관련 지원
12.2%



법률 지원
4.9.7%

Ⅲ.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I.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III.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사회적 기업의 개념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혹은 조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기업이나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의 공급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

- **피차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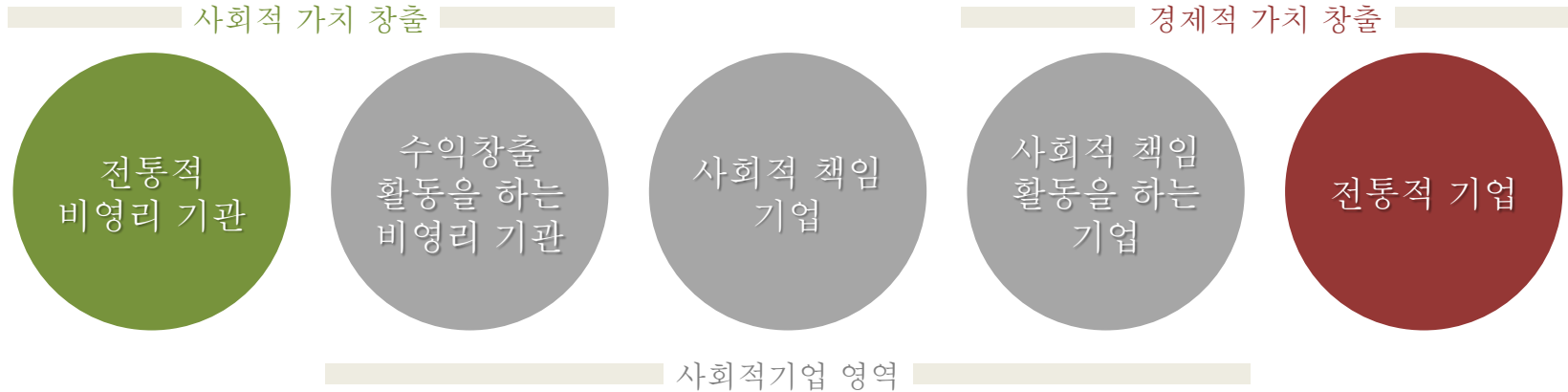
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2. 사회적기업의 영역 및 의의

Ⅲ.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 확산착한 소비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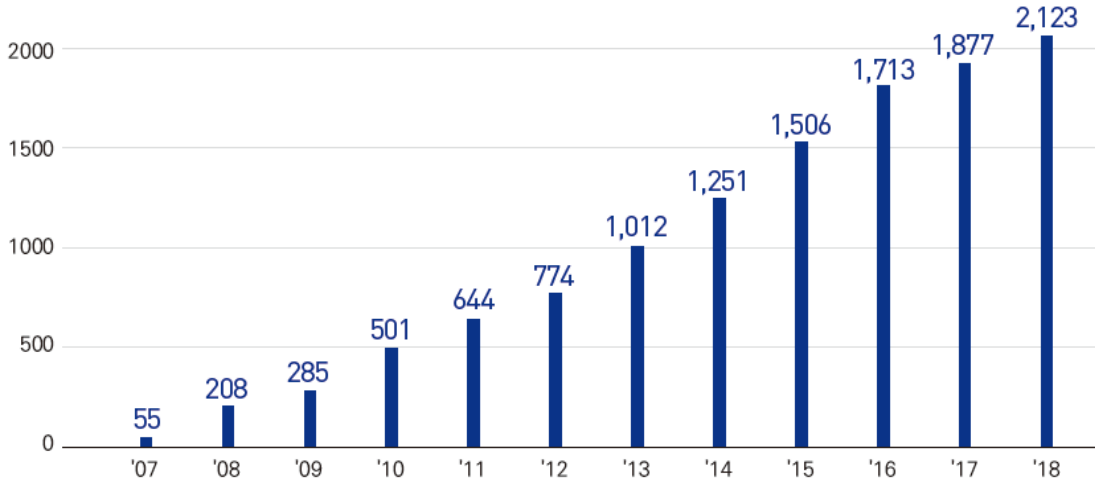
3. 사회적기업의 유형

목적	주요 내용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50%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p>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창의·혁신형	<p>•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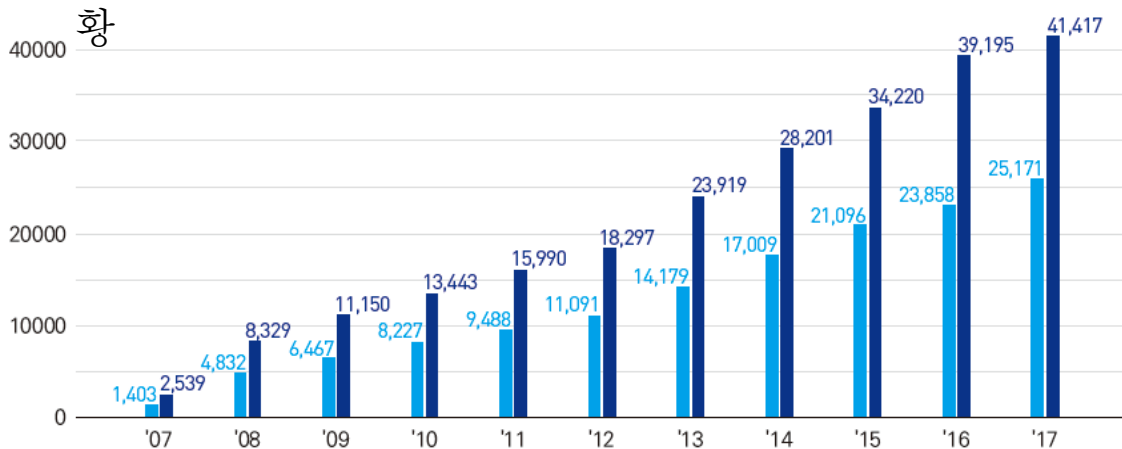
4. 사회적기업 현황

Ⅲ.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사회적기업 인증 현(2018년 12월 기준)



● 사회적기업 고용 현(2018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서비스분야	기업수	비율
문화, 예술	245	11.3%
청소	204	9.6%
환경	114	5.4%
교육	183	8.6%
사회복지	115	5.4%
간병,가사지원	96	4.5%
관광, 운동	48	2.3%
보육	15	0.7%
보건	16	0.8%
문화재	9	0.4%
산림보전	9	0.4%
고용	8	0.4%
기타	1,061	50.0%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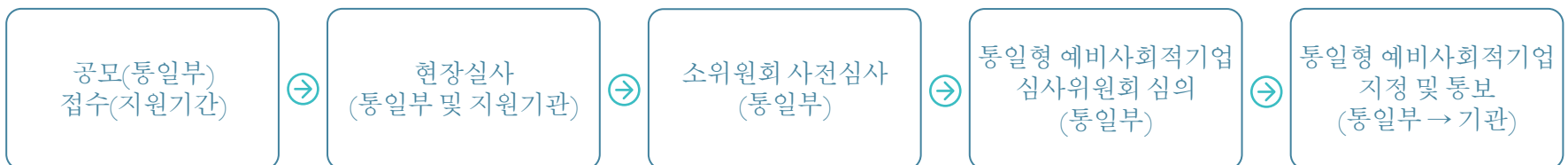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 적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남북하나재단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 체계 및 지원

단계	구분	지원주체	지원내용
1단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통일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단계	사업개발비 지원	남북하나재단	기업당 2천만원 범위 내
3단계	사회적기업 인증	통일부	인증을 위한 추천

● 지정절차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지정요건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 법령

및 수
지정요건

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내

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조직형태

- ① 「민법」상 법인·조합
- ②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지정요건	내 용
<p>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기타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p>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5.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지정요건	내 용
<p>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년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p>노동관계법령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수행사업 관련 • 지정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현행법 준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 관련 관을 지정기관에 합참할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Ⅲ.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구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 연 1억원 예비 : 연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정) 지정기간내 2년 (인증) 해상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 3년(보험료지원 4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IV. 문제점 및 정책 방안

I.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IV. 문제점 및 정책 방안

<201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번호	사업주체	업종	비고
1	메자닌 아이팩	박스생산	노동부 인증
2	메자닌 에코윈	블라인드 생산	노동부 인증
3	(주)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서울형
4	고마운손	핸드백 등 가죽류	노동부 인증
5	북한이탈주민회	공연예술사업, 만두생산	사업중단
6	테일리NK	북한정보 판매서비스	서울형1차
7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북한전통음식 캐터링	서울형1차
8	NK지식인연대	북한맛나 정식식당	서울형1차
9	영통포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서울형2차
10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문화예술사업	서울형1차
11	하나여성회	자동차 핸들 관련 작업	서울형2차
12	(주)삼천리특수여객	특수여객사업(장레)	서울형2차
13	고마운사람	지갑, 핸드백 사업	서울형2차
14	함께일하는사람들	택배사업	서울형2차
15	탈북여성연대(희망어패럴)	의류생산	서울형2차
16	하나컬처	여성사업 및 온라인사업	서울형2차
17	푸른나눔재단(북카페)	탈북청년 북카페	서울형2차
18	한빛복지재단	떡집	서울형3차
19	(사)열린북한방송	대북방송	서울형2차
20	평양예술단	문화예술사업	서울형
21	북한즉석떡가루	속도전 떡 제조	서울형

<2011~201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정 기업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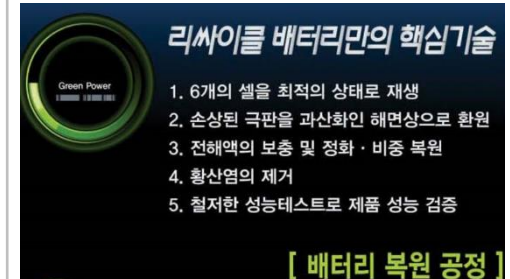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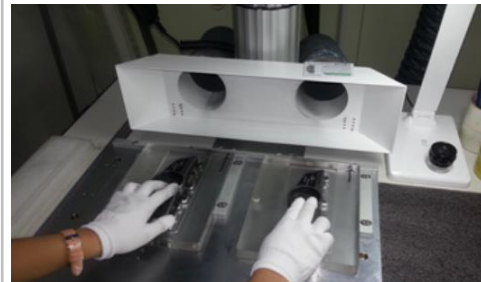
(사)새희망센터 일자리 사업단	(주)금강CH 무역	NK 인포메이션	유엠씨에스
(주)청류옥	(주)나누미	성통만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자활공동체
(사)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한우리사업단	(주)FNK 미디어센터	겨레일	원테크놀로지
(주)만경식품	(주)옥정	길성그린	하얀세상
(주)필라이트 솔루션	(주)송우임산 물	디앤아이푸 드	백년기업
(주)해바라기식품 유통 시스템	(주)정성원	떡마당	백록담
두인테크	한송앤앤에 프	싱싱푸드	동방통상
해피트리	초코비	인성피엔씨	정민서
뉴포커스	진성메디	에스이엔티 소프트	플랜트 A
우드림썬브라이트	수진어패럴	향기로운 외식세상	엔케이디씨티
비마트랜스	남북통일예 술인협회	대왕버섯 영농조합법 인	엠엘인터내셔널
에텐데코	굿인	평양통일 예술단	해피트리
에스이엔티소프트	백년기업	-	-

2. 통일부 정책지원 수혜 기업 사례

IV. 문제점 및 정책 방안

기업명	(주)아리랑패션	(주)원테크놀러지	(주)굿인
설립	2011. 8.	2012. 3.	2011. 7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3. 8.	2012. 12.	2012. 6
대표	이수홍	남성현	김월곤
사업내용	여성브랜드 토탈 봉제	자동차 오디오 부품 생산	폐배터리재생

내부 및
홍보 사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이주자 집단이기는 하나 우리와 같은 혈연 공동체라는 점에서 타민족 이주자에 비해서는 좀 더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3년간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이 30%에 불과
 - 2018년이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금감이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에 있어서 지난 12년간 긍정적 견해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 견해는 증가
 -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와 ‘탈북자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치가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일반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진단 및 실태조사

- 2010~2013년 상반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을 장려해 온 초기단계에서 2013년 하반기 부터는
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을 최소지원 조건으로 제시했던 초기 정책 형태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서비스
시행 기업 혹은 혼합형 기업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중기적 변화를 추진
 - 북한이탈주민 출신 혹은 사회적 서비스 자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최소 지원
조건을 지키며, 정부지원을 수혜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후 정책 지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도적

으로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비영리기관과의 연계를 시행

- 정책사업의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판매품 확대 등 다양한 연계지원이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창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쟁력을 갖도록 특성을 고려한 업종 선정, 대상자 선발,
분야별 이론·실습 교육,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
 - 영농창업 : 영농성공패키지를 통한 귀농 지원, 영농운영비 지원
 - 생활자립형 창업 : 소셜프랜차이즈(“이야기를 담은 라멘집”), 푸드트럭, 네일아트, 옷수선(리폼)
-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분단에 따른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가 공동체의 번영과 국제적 위산을 제고
 - 통일로 인한 안보위협을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은 생계형 창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는

참고문헌

김현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 신진연구논문집(2013)

통일부,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2018)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2016)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2018)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2019)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2019)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남북하나재단,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